

접 수	의안과 - (20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국제문화교류 관련 법 제정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 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1 년 8 월 2 일

청 원 인

성 명 : 민 정원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 4동 삼풍 아파트 22-1003

전화번호 : 02-532-7581

(휴대전화 : 010-8804-7581)

소 개 의 원 : 강태영, 황미현, 장소희, 한희재, 이연수, 김현경
(인) 외 14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 4동 삼풍아파트 22-1003
	성명 : 민 정원
건 명	국제협력위원회의 다수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국제 교류법 제정
소개년월일	2011년 8 월 4 일
<p>소개의견</p> <p>청원인 민정원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청소년의원입니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2011년 8월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 중 의결된 안건 하나가 『청소년 및 전 국민의 동등한 교류 기회』 이었습니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에서 의결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가 간의 교류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법률이 미비하여, 교환학생과 어학연수등 소수를 위한 제도가 아닌 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교류 기회를 제공 하므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류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지하철, 버스, 시청, 그 밖에 공공기관, 사업체 등에서 우리나라를 홍보하고 해외의 문화를 알리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므로서, 해외 문화교류를 촉진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문화도 외국인에게 알려 우리사회의 문화 의식을 증진시켜 내국인들에게는 문화의 자부심과 외국인들에게는 우리문화를 알리는 것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는 것입니다.</p> <p>그러므로 꼭 글로벌 시대의 한국에서 필요하게 제정해야하는 법이므로 저희는 입법청원을 합니다.</p> <p>청소년 의회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p> <p>가. 문화교육을 통하여 국민의 자의식을 증진시킴으로써 한국인으로서의 자의식을 구현하고 세계적 문화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안 제1조).</p> <p>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교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p> <p>다. 문화 교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교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p> <p>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 교류의 연구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를 문화 교류시설로 인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p> <p>마.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는 학생 및 교사에 대하여 문화교류 기회를 최대한으로 제공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13조).</p> <p>사.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기업들은 국가의 문화 교류 및 교육에 이바지함.(안 제14조 및 제 16조).</p>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교류의 진흥에 공적이 있는 기업 등에게 「상훈법」에 따라 포상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 교류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문화 교류진흥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 교류를 통하여 국민의 세계화를 증진시킴으로써 한국인으로서의 자의식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경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 교류”란 문화에 대한 지식 및 이해를 습득·향상시킴으로써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와 품성을 키우며, 문화 수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실천적 역량을 기르고 해외의 문화보호 등 문화적 의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구급·보호시설, 군대, 학교, 그 밖의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등에서 실시하는 문화 교류 및 수용에 관한 홍보 및 교육 활동을 말한다.

2. “문화 교류 단체”이란 이 법에 따라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인가된 시설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문화 교류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2. 문화 교류의 내용과 방법의 개발
3. 문화교류시설의 설치·운영 및 개선
4. 문화 교류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
5. 해외 문화 및 국내 전통 문화 분야 전문가 및 인권교육강사의 양성
6. 그 밖에 문화 교류 및 홍보/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항

② 국가는 문화 교육 시책추진이 미진하거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문화교육의 추진

제4조(문화교류위원회) ① 문화 교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교류위원회를 둔다.

② 문화교류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령으로 정한다.

제5조(문화교류위원회의 기능) 문화교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 교류 및 홍보에 대한 법령·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및 문화교육의 홍보
2. 문화 교류의 지침의 수립
3. 문화 교류를 위한 재정지원에 대한 검토

4. 그 밖에 문화 교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문화 교류시설)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문화 교류에 대한 연구, 문화 교류 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문화 교류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문화 교류의 연구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문화 교류시설로 인가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인권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장 문화교류 등

제7조(대중교통에서의 국제 교류) ① 대중 교통의 장은 소속 종사자 및 대중 교통 이용자에 대하여 문화 교류의 충분한 기회를 위한 해외 방지를 위한 문화 교류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대중 교통의 장은 제1항의 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에서의 국제교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국제 교류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에게 국제 교류와 관련된 강좌개설 및 연구소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교육과정 및 수업의 보조) ① 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의 교육과정에 국제 교류 및 문화 교류를 고취시키기 위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 별도의 과목으로 문화 교육을 위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이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0조(지도·감독)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법에 따른 국제 문화 교류 및 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 관광부는 제1항의 지도·감독의 결과 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 및 사업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표창)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교류 및 홍보 그리고 교육의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 등에게 「상훈법」에 따라 포상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다.

② 포상 또는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재정상의 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제 문화 교류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제 교류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조치결과를 제출한 자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은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4조(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문화체육관광부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별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찬성하면서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의장이 제안한 청원을 소개합니다.

소 개 의 원

민 정 원 인

청원서

국제문화교류 제정에 관한 청원

1.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화 교류의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법률이 미비하여 국내에서의 국제 교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바, 국제 교류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교류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대중교통, 학교, 그 밖의 공공기관, 사업체 등에서 문화 교류를 실시를 의무화하여 문화 교류 및 교육을 사전에 예방하며,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문화 교류 의식을 증대시켜 세계인으로서 한걸음 더 다가가고 세계 통합에 이바지하고자한다.

가. 문화 교류를 통하여 국민의 국제 시민 의식을 증진시킴으로써 세계인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국제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제 교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안 제 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 교류 및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국제 교류 및 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교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

라. 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은 문화교류의 연구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를 문화교육시설로 인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 마.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는 학생 및 교사에 대하여 문화교류를 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13조).

□ 사. 그 밖의 공공기관 및 사용자는 소속 종사자에게 충분한 문화 교류의 기회를 위하여 문화 교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6조).

□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권교육의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 등에게 「상훈법」에 따라 포상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교류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문화교류진흥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문화 교류를 통하여 국민의 국제 시민 의식을 증진시킴으로써 세계인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국제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제 교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 교류”이란 일반인들끼리 대화에 참여하는 것부터 참여해서 국제적인 행사에 까지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활동을 말한다.

2. 문화교육시설”이란 이 법에 따라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인가된 시설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국제 문화 교류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2. 국제 문화 교류의 내용과 방법의 개발
3. 국제 문화 교류 단체 의 설치·운영 및 개선
4. 국제 문화 교류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
5. 국제 문화 교류분야 전문가 및 국제 문화 교육의 양성
6.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항

② 국가는 국제문화교류 시책추진이 미진하거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국제문화교육의 추진

제4조(문화교류위원회) ① 문화교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제문화교류위원회를 둔다.

② 국제문화교류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제문화교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국제문화교류위원회의 기능) 국제문화교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 교류에 대한 법령·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및 국제문화제도

의 홍보

- 2. 문화 교류의 지침의 수립
- 3. 문화 교류를 위한 재정지원에 대한 검토
- 4. 그 밖에 문화 교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문화교류시설) ① 국제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문화 교류에 대한 연구, 문화교류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인권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교류의 연구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인권교육시설로 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문화 교류시설의 인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문화교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장 인권교육 등

제8조(대중교통에서의 국제 교류) ① 대중 교통의 장은 소속 종사자 및 대중 교통 이용자에 대하여 문화 교류의 충분한 기회를 위한 해의 방지를 위한 문화 교류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대중 교통의 장은 제1항의 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에서의 국제교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국제 교류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에게 국제 교류와 관련된 강좌개설 및 연구소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교육과정 및 수업의 보조) ① 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의 교육과정에 국제 교류 및 문화 교류를 고취시키기 위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 별도의 과목으로 문화 교육을 위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이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외국인 고용 사업장에서의 문화교육) ①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고용된 외국인에게 문화 교류 기회를 침해당한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매년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고용하고 있는 내국인이 외국인의 문화를 침해하는 언동을 행하지 아니할 것을 주지시키고 문화 교류 기회를 침해하는 언동을 하는 경우에는 인사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문화교류 교육의 위탁)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소속 종사자를 국내외의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문화 교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13조(문화교류의 절차 및 방법) 제9조·제10조 및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문화교류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한다.

청원인 성명 : 민 정원

청원인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 4동 삼풍 아파트 22-1003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청원제출서류 기재요령

1. 청원제출서류는 청원제출용지,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서 각각 3부씩(이중 2부는 사본)이며,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청원제출용지

- ① 「제목」은 청원요지가 분명하도록 하되 간략하게 정해 주십시오.
- ② 「청원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란에는 대표자의 것만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날인」란에는 대표자의 실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외 청원인은 인원수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성명 :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길동 (인) 외 24인(법인)

③ 소개의원은 1인 이상의 현역 국회의원이면 가능하며 별첨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시켜야 합니다.

④ 의원인장은 사무처 총무과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청원소개의견서

- ① 청원소개의견서는 당해 청원을 소개하는 국회의원이 작성합니다.
- ② 「소개의견」란에는 청원취지와 소개이유 및 의견을 기재합니다.

연 번	성 원 명명	날 인	조 속 정 당	쏘속위원회	날선 계인구	비 비 코

③ 의원인장은 청원제출용지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4. 청원서

- ① 청원서는 청원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원서의 표지나 말미에 청원인의 주소, 전화, 성명을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구성에 있어 청원제목, 취지,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 ②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는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별첨의 청원인 서명날인부와 소개의원 서명날인부에 기재 및 날인하여 주십시오.
- ③ 청원서 용지규격은 가급적 정부공문서 용지의 기본규격인 에이4(A4)규격(가로210mm, 세로297mm)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